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강승수 의원 외 9명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구미시 농업경제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존의 불명확한 기금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표기(안 제4조3항)

나. 연도별 집행한도 개정으로 기금 조기 소진 방지(안 제6조제4항)

다. 기금운용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기금출납원 명칭 개정(안 제14조)

라. 지원대상 농축산물 품목 “쌀” 포함(안 제15조제1항)

마. 기금조성 지연에 따른 지원 시기 개정(안 구미시조례 1037호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59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2. 11. 18. ~ 11. 23.)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금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지원대상 농축산물 품목에 ‘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을 목표로 2015년 설치된 이래 현재까지 47.84억원 조성되었음.
- 현재 사과, 고추, 양파 등 9개 품목에 대한 지원에서 ‘쌀’을 추가하는 것은 쌀 재고량 등을 감안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타 품종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가격안정기금 운용으로 관내 농축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 및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